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1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1.
발의자 : 강선영 · 성일종 · 최수진
유상범 · 김민전 · 이만희
이인선 · 박준태 · 이달희
이철규 · 김석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른 무제한토론 제도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
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수단임.

그러나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간
의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하거나, 회의의 질서
유지 등을 근거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, 무제
한토론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중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
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,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
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,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
성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,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6조의2제11항 신설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의2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⑪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6조의2(무제한토론의 등) ① ~ ⑩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106조의2(무제한토론의 등) ① ~ ⑩ (현행과 같음) <u>⑪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</u> <u>구하고 제1항에 따른 무제한토</u> <u>론을 실시하는 중에 의장은 각</u> <u>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</u> <u>없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</u> <u>회를 선포할 수 없다.</u></p>